

「구미시의회와 국내의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5월 23일

나. 발 의 자: 김근한 의원 (1인)

다. 찬 성 자: 강승수, 김낙관, 김민성, 김재우, 김춘남
소진혁, 양진오, 이정희, 장미경, 정지원
의원 (10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5월 26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6월 4일

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근 한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회가 국내의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 의정역량을 강화하고,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며 지방의회간 상호 이해 및 우호증진을 제고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 ~ 제6조)
- 체결식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 ~ 제8조)

라. 참고사항

- 예 산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재 환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의회와 국내·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세부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류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임.
- 또한, 체결식, 사후관리와 협약해지,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도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 됨.
- 조례안 전체적인 내용상 흠결이 없고 상위법령 또한 위배 되는 사항이 없기에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